

충청북도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(안)

검 토 보 고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제출일자 : 1999년 12월 20일

나. 회부일자 : 1999년 12월 20일

3. 제안이유

현실과 맞지 않는 불합리한 조문과 용어정비 및 일부조항을 법령에 부합되도록 보완.

4. 주요골자

가. 규칙공포시 장관의 승인을 얻은 것일 경우 그 뜻을 전문에 기재토록한 단서조항 삭제(안 제4조)

나. 용어 정비 : 지방자치단체→도(안 제5조)

다. 조례·규칙의 공포방법 조정과 예산의 고시를 신설하였으며, 고시방법은 조례·규칙의 공포방법을 준용(안 제7조)

○ 현행 : 도보 또는 일간신문 게재, 게시판 게시

○ 개정 - 도지사 : 도보 게재

- 도의회 의장 : 도보 또는 일간신문 게재, 게시판 게시

5. 검토의견

충청북도 조례·규칙등 공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

이는 관련법에 맞지 않는 조문의 삭제와 용어의 정비

- 규칙공포시 장관의 승인을 얻은 것일 경우 그 뜻을 전문에 기재토록한 제4조(규칙)의 단서조항 삭제 : 다만, 그 규칙이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것일 때에는 그 뜻을 전문에 명기하여야 한다.
- 제5조중 예산 및 예산외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
→ 예산 및 예산외의 도의 부담을

그리고 조례·규칙의 공포방법을 조정하고, 예산의 고시를 신설하여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2조와 부합되도록 보완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

- 현 행 : 도보나 일간신문 게재 또는 게시판 게시
개 정 - 도지사 공포 : 도보 게재
- 도의회 의장 공포 : 도보 또는 일간신문 게재, 게시판 게시
- 예산의 고시 신설 : 제7조(공포방법) ② 예산의 고시에 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

※ 붙임 : 충청북도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(안)